

圖書館法座談會會議錄

日 時：

1963年 10月 8日 午後 2時

場 所：

圖協事務局會議室

參 席 者：

崔 洛 久 (國立圖書館長)

申 淳 甲 (文教部 社會教育長)

金 康 鉉 (文教部 法務官)

朴 熙 永 (外國語大學圖書館司書長・圖協常務理事)

司會・李 鍾 文 (圖協事務局長)

李鍾文：圖書館界에서 8年前 全國의 圖書館과 圖書館 專門職의 聯合體인 韓國圖書協會를 設立한 1955年 4月 16日의 創立總會에서 圖書館法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이의 制定을 推進한 以來 8年만에 圖書館法을 갖게 되었습니다. 待望의 圖書館法이 지난 10月 5日 最高會議를 通過한 以來 저이들 圖書館人들은 가슴이 벅찬 感을 禁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圖書館法을 推進한 저이 實務者들과 圖書館法의 內容에 밝으신 本協會 常務理事 朴先生과 한자리에 모여 그 經由와 內容에 關하여 檢討해 봄이 意義 있는 일이라 生覺됩니다.

도리켜 보면 圖書館法의 制定經緯는 文字 그대로 受難의 繼續이었읍니다.

먼저 이번 圖書館法을 制定함에 있어

文教部の 主務課長이신 申先生任이 赴任하셔서 軋치를 올리게 되었는데 損失禮의 말씀입니다마는 申課長께서 이 圖書館法을 어떻게 推進하시게 되었는데 이 點에 對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申淳甲：이 圖書館法은 方今 말씀하신 바와같이 全體 圖書館人들의 8年以來的 宿願이 었읍니다. 8年前인 1955년에는 우리나라 全國圖書館數는 全部 合쳐 70館에 不過했든것이 現在 450館이란 數로 增加되었음을 볼때 우리의 環境이나 社會의 要求가 圖書館利用의 必要性을 切實히 要請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圖書館이 急速度로 增加되고 一般의 關心이 高調되고 있는데 그 法的基礎를 이루는 圖書館法이 마련되었는지 않다는것은 圖書館界의 健全한 發展과 合理

의인 運營을 爲해 矛盾된다고 보았읍니다. 그래서 文敎部로서는 法的인 基礎가 되는 圖書館法의 制定을 서둘러 今般 通過를 보게 된것입니다.

李鍾文: 그런點 저이들은 圖書館에 對해 理解와 關心이 格別하신 申課長任을 피시고 圖書館法을 制定케 된것을 고맙게 生覺하고 있습니다. 特히 文敎部에서 法을 다루시는 金法務官께서는 이法을 起草하시며 느끼신點 말씀해 주십시오.

金康鉉: 내가 이 法을 取扱하면서 처음 느낀것은 法制定에 있어서의 過程입니다. 大概 法이란 어떤 動機에 原因하여 만들어지는데 過去 制定된 大部分의 法은 官廳內部の 사람들이 必要性을 느껴 制定하였읍니다. 그러나 今般 圖書館法은 圖書館協會와 圖書館關係者들의 建議와 盡력이 重要한 役割을 했지 않느냐 보는 것입니다. 그間 圖書館法을 制定하면서 主務課長이 세분이나 바뀌었읍니다. 그러면서도 事務보는 사람들 自體는 直接 이 圖書館法에 對한 切實한 要望을 느끼지 못한것을 實際의인 일을 맡고 계시는 分들의 熱誠있는 建議와 推進으로 結局은 行政하는 사람을 이끌어 成功시켰다고 봅니다. 그러한 만큼 法制定에 있어서도 法務官이란 職責이 大端히 消極的이었음을 未安하게 生覺하며 여기 關聯된 主務課長, 國立圖書館長 圖協이 主動되시어 建議함으로써 制定이 可能하였읍니다.

大概 法을 만드는 動機, 過程에 따라서 法의 效果란 것이 누가 많이 갖게 되느냐를 決定합니다. 官僚가 그 必要性에 따라 만들어진 法과 實際로 쓰는 私의인 團體가 이를 積極的으로 움직여서

制定하는 法과는 相異합니다. 이 法은 本質的으로 民主主義的인 過程을 밟아 이룩된 것입니다. 다만 그 內容이 잘못되었느냐 또는 現在 欲求하는것이 充分히 反映되었느냐함은 앞으로 檢討해보아야 될것입니다만 法制定上의 動機와 過程에 있어서는 民主的인 節次를 거친 것으로 思料됩니다.

李鍾文: 이 法을 制定하면서 特히 金法務官과 저와는 中間 意見衝突도 여러차례 거듭했고 境遇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失禮를 한點 이 座席을 빌어 深甚한 謝過를 드립니다. 저이 實務者로서는 보다 낡은 法을 만들려는 一念에서 었읍니다. 法內容에 滿足하지는 않으나 그 責任은 우리의 가난(貧困)에 있을 것입니다. 圖書館法을 推進할 當時 일을 맡은 當事者인 社會敎育課長, 國立圖書館長 그리고 圖書館協會事務局長을 가리켜 三銃士라고 呼稱하드군요. 이번 일에 國立圖書館長께서 苦心이 많으셨는데 어떻게 生覺하시는지?

崔洛久: 너무 過分합니다. 金法務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法制定은 圖書館人들의 建議로해서 民主的인 過程을 밟아 이룩되었다고 하셨는데 謙遜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같이 積極 協助해 주신 申課長도 法을 研究하신 分이고 金法務官任과 個的으로 莫逆한 親分을 平素에 갖고 계시 相互協助가 容易했고 더욱이 圖書館法의 必要性和 重要性을 누구보다도 切實히 認識하셔서 力量을 推進하신 結果라 믿읍니다. 저는 圖書館에 從事하는 關係上 여러面에서 無理한 要請도 하면서 努力했으나 未洽한 法內容이 나마 通過되게 해주신點 이 자리를 빌

어 세삼스레 感謝드리고 싶습니다.

李鍾文 : 今般 圖書館法의 制定이 끝나고 앞으로 公布만이 남아있는데 저이들 圖書館人은 지난 8年間 法을 爲해 苦生해 왔읍니다. 特히 오늘날까지 圖書館法을 爲해 努力하신 圖書館協會의 理事 朴先生任께서 過去와 이제 法을 놓고 座談會를 갖는 所感의 一端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朴熙永 : 圖書館法을 처음 우리나라에서 制定하자고 論議되기 始作한것은 1955年 4月 16日이였읍니다. 生覺하면 於焉間 8年이 經過하였읍니다. 結局 圖書館自體가 發展된 것이 오늘날 圖書館法의 制定을 推進하는 原動力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于先 1955年 4月 協會가 創立된後부터 圖書館法에 對한 論議가 活潑했고 그 草案을 처음 作成하였는데 4章 13條로된 公共圖書館法이 었읍니다. 그것이 다시 1956年 1月 7日 草案을 作成하였으나 推進途中 流產되었고 1957年 5月 8日, 協會안에 法制定委員會를 構成하여 그해 11月 15日 6章 35條의 法案이 再作成되었읍니다. 그안에 國立圖書館에 對한것이 一個章을 이루었고, 大學을 包含한 學校를 統轄해서 學圖校圖書館이라 呼稱하였읍니다. 그다음 세번째로 1958年 7月 다시 內容을 修正했고 行政分委가 構成되어 4章 30條로 된 法案을 또 만들었읍니다. 여기에는 國立中央圖書館을 設置한다는 事項이 包含되었읍니다. 이 草案이 國會에 까지 論議되어 그해 11月 20日 閔壯植議員이 正式으로 國會에 提議하였읍니다만 當時의 複雜한 國會事情에 依해 廢棄되었으며 1959年 5月에는 네번째로 協會에서

法案을 再作成하여 4章 35條로 된 法案을 만들었읍니다. 이때는 圖書館法에 關한 關心이 社會的으로 多少 普及되어 6月에는 韓國日報主催로 이에 對한 座談會도 가졌읍니다. 그러던것이 1961年 6月 10日以後 最高會議에 建議하여 1962年 7년에는 次官會議에 까지 上程되었다가 廢棄되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 4월에 着手하여 지난 10月 5日에 비로소 最高會議常任委員會에서 4章 29條로 된 圖書館法이 制定된 것입니다. 8年間 우리가 예써 推進해온 法이 우리가 當初 構想한 바와는 多少 差異가 있으나 그래도 法이 우리앞에 놓여 있다고 느낄때 마음 든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하면 우리 圖書館界를 發展시키느냐하는 問題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李鍾文 : 고맙습니다. 金法務官과 朴理事의 經過 말씀과 같이 그間 이方面에 關係 있는 분이여 圖書館實務者가 熱誠껏 推進하기 爲해 努力을 하였다는 點입니다. 제가 圖書館協會事務局長으로써 말씀드리면 去年 1962年에 처음으로 韓國에 全國의 圖書館人이 모여 圖書館大會를 開催하였읍니다. 그 理由는 제가 圖書館協會에 와서 느낀點이 果然 韓國에 圖書館法만이 없어서 圖書館이 發展 못한것이나 그러면 圖書館法이 나오기까지 우리 스스로가 準備하고 法이 不遠나왔을때에 對備하여 우리가 먼저 解決할것은 없느냐, 있다면 무엇이냐 함에 關心을 갖었읍니다. 그래서 圖書館大會를 開催하였고 全國에서 史上 처음으로 246名이란 現職 圖書館人이 모여 現在 어느 時點에 서있느냐 그리고 圖書館法

을 어떤 方法으로 推進시키느냐 또 저 이들이 그것을 推進하면서 一面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達成하느냐를 2日間 眞摯하게 會議을 가진것입니다. 거기서 느낀것은 法이란것은 官廳에서 必要하여 制定하는것도 있고 法을 制定할때까지 저이들 스스로가 官廳이 必要를 느끼도록 움직여 認識케 한다는點 우리들의 總力を 어떻게 集中시키느냐 하는點을 摸索하였읍니다. 그結果 今年에 또다시 法을 制定코자 着手하여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金康鉉: 이 法案을 제가 着手한 것이 去年으로 記憶합니다. 去年 이 法案이 整理되어 上程될때 實은 저이들로서는 上程되는것을 거부스리 生뿔했읍니다. 왜냐하면 當時 閣議나 次官會議의 空氣로 봐서 通過될수없는 條項이 內包되어있었다는 點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올린 理由는 圖書館當務者들의 熱意가 大端하고 그것이 最高會議에도 反映되어 結局 올리지 않을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率直한 말인데 問題는 或 우리의 豫想을 뒤엎고 熱意로 봐서 通過될수도 있지않겠느냐는 希望에서 上程한것입니다. 結局, 地方自治團體를 主管하는 部處의 關係者들의 反對로 因해 失敗되었으며 原因은 한말로 要約하면 地方自治團體에다 莫重한 負擔인 施設義務를 지운다는 것이었읍니다. 當時 우리는 그것에 關해 어떻게 說明했느냐 하면 地方自治團體에서 莫大한 負擔이요 運營이 可能하다고 固執했읍니다. 그때 教育自治制가 廢止되었음에 自治廳인 教育區廳이 必要케된 建物이 생기기 이를 圖書館建物로 使用하고 圖書

館內部問題는 文教部社會教育課에서 推進하는 事業과 結付시켜 이 案을 通過시켜달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人件費에 關해서는 自治團體가 負擔하면 되겠는 데 그것이 莫大한 額에 達하니만큼 入件費를 別途로 徵收하자는 것이었읍니다. 우리가 어떤것을 만들때 그것을 育成하는 것이 더 重要한 意義가 있는것입니다. 키울수 있는 要素를 理想에 맞도록 한다고해서 除去해 버린다면 키워나갈 道理가 없는것입니다. 圖書館協會가 反對하는 몇가지 條文에 對해 그 趣旨들이 사람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理想만을 좇는다면 韓國에서 圖書館法은 遼遠한 後日에나 蔓들어 질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圖書館施設을 擴充한다는 點이 이제는 事情이 달라졌읍니다. 何如든 그러한 問題로해서 去年에 次官會議結果 保留 撤回되었읍니다. 그後로 死藏되다싶이 된것이 社會教育課長의 意圖가 하나의 問題點이 되고 出發點이 된것입니다.

妙하게 그 法案을 擔當하시고 圖書館法을 다루던 課長이 國國立書館長이 되었고 그다음에 市文化課長으로 계시면서 이 法을 잘 아는 申先生任이 社會教育課長이 되어 큰 힘이 되었읍니다. 이렇게 된것까지는 잘 되었는데 그後 자칫하면 여러차례 死藏될뻔 했읍니다. 왜냐하면 最高會議의 立法 스케줄에 따라서 그 모든 部處가 스케줄 그대로 움직여 주었으면 될터인데 마즈막날에야 法制處에 法案을 提出했든 것입니다.

그러니 長, 次官會議에서 그 많은 法案을 마끔까지 處理하기가 大端히 어렵게 되어서 結局 64年度 豫算 및 아니면

選舉에 關係된것, 그리고 其他 緊急을 要하지 않는것은 民政 뒤로 미룬다는 原則을 세워 立法은 廢棄 될뻔 했습니다. 이러한 事實을 國立圖書館長이 아서서 나와 甚至於 長, 次官까지 動員하여 그 스케줄을 바꾸는데 數日 手苦했습니다. 그때 上程되지 않았다면 成功되기 至難했을 것으로 生覺됩니다. 왜냐하면 이 法案은 어떤 政治的, 行政的 緊急性이 稀薄한 即 權力을 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法이 었습니다.

그間 最高會議等 여러 關係部處에서 서둘렀기 때문에 잘된것으로 봅니다. 이 法令을 擔當한 自身으로서도 홀가분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오로지 適期에 計劃하고 推進한 여러分의 努力의 結晶이라 生覺합니다. 앞으로 남은 問題는 施設과 職員養成에 있어서 充實化를 期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民衆運動으로 推進하든지 現在 社會教育課에서 擔當하는 讀書運動과 結付시켜 有終의 美를 겨두었으면하고 希望하고 있습니다.

李鍾文: 圖書館法을 推進하면서 느낀 點이 또 있습니다. 이 法이 權力을 要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關係部處에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弱한것에 對한 同情이랄까 協助를 얻을수 있었고 또 關係者 모두가 法案을 理解했고 必要性을 共感했다는 것입니다. 이런면 앞으로는 圖書館人들이 圖書館界의 發展을 爲하여 舍心하여 努力만 한다면 돈과 權力이 없어도 向上될수 있는 餘地가 있다는 點에 感銘되느냐 있었습니다. 또 文教部長·次官任이 무척 이 法을 爲해 苦生하

습니다. 最高會議等 關係部處에 急할때는 率先하시어 活躍하셨음을 圖書館協會로서 이 자리를 빌어 感謝를 드립니다. 또한 法制處의 韓錫範法制官의 勞苦에 對해서도 아울러 感謝드립니다.

崔洛久: 金法務官께서 말씀 있었으나 다만 圖書館法이 次官會議에서 却下된 後 圖書館長으로 赴任했습니다. 當時 數次 圖書館法을 制定코자 計劃했습니다만 當時 國家의 豫算關係를 擔當한 部處와 地方自治를 하고 있는 部處에 負擔이 크기 때문에 反對를 하여 不可能했습니다. 제가 在職時 制定코자 했으나 成事치 못했던 點 責任을 느끼는 바입니다.

今年과 昨年の 法과는 內容이 相異했지만 法制定을 爲해 協助部處 即 豫算을 가진 部處와 地方自治의 所管部處와 相議하기 始作했습니다. 처음은 相當히 見解의 差異가 있어 잘되지 않아 圖協의 李局長, 申課長과 더불어 圖書館界의 專門의 內容을 充分히 說明하여 理解를 促求하고해서 比較的 協助를 입은바 많았습니다. 그래서 原則的인 問題에는 大體로 合議를 보고 들어갔으나 다만 時機가 時機인 만큼 即 各部處에서 많은 法案을 한번에 내었던만큼 其中 緩急을 가려서 審議하게되어 이點 苦衷이 많았습니다. 最高會議第96次常任委員會에서 民政移讓前에 通過시켜야할 法案에 對해 네가지 原則을 定했습니다. 이原則은 主로 新憲法에 저속되거나 또는 그에 隨件되는 法 來年度 豫算執行에 根據가 되는 法 그 外에 時急한 法令等이 原則에 該當되었는데 圖書館法은 이 原則에 該當되지 않는다하여 最高會議에

서 却下될 運命에 놓였던것을 關係官들이 이 法案의 必要性을 認定해 주어서요 이번에는 比較的 귀여움을 받으면서 最高會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最高會議에서도 亦是 이 法의 必要性에 認定하여 法이 通過된 것입니다.

제가 圖書館法을 통해 느낀것은 行여 知識인이 모이면 우리나라 文化政策이 너무 弱하다든지 等閑하다는데 對해 不平이 많이 있습니다. 저이들도 圖書館法을 다룰때 關係人士에게 이 法의 內容을 體面을 不拘하고 區區히 說明하여 理解시켰습니다. 처음에는 圖書館法의 必要性은 알고있으나 內容에 드러가 무엇때문에 必要하며 現實적으로 보아 어떠한 實利가 있느냐 하는點 理解못하였으나 그 骨子を 仔細히 說明함으로써 納得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切實한 必要性을 政策樹立과 同時에 關係要路에 機會있을 때마다 理解토록 努力을 거듭해야 圖書館界가 앞으로 發展을 必할수 있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法中 公共圖書館의 入館을 無料로 한다는것은 처음에는 草案에 들어있으나 公共圖書館을 各自治團體마다 設立한다면 많은 經費와 人員이 所要됩니다. 이 人件費에 對하여 相當한 論議가 있었으며 이로 因하여 流産될 危機에까지 數次 達달했으나 우리나라 實情으로보아 困難하여 法에는 規定치 못했으나 받을 수 있다는 程度로서 融通性을 期했습니다. 換言하면 豫算이 許容할 時機가 오면 빠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生覺됩니다.

李鍾文 : 네, 公共圖書館의 入館料問題에 對해 朴先生任 어떻게 生覺합니다.

朴熙永 : 公共圖書館의 入館料를 받지 못한다는것은 저이들이 처음에 내세운 主張이 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境遇 圖書館法의 條文을 볼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原來 저이들은 끝 끝내 받아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崔館長任의 말씀을 듣고보니 條文이 地方自治團體에서 自己네의 條例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또 現在 받고있지 않는 圖書館에서는 繼續해서 받지 않아도 되게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申淳甲 : 入館料問題에 對하여 말씀이 계셨는데 이 入館料는 原則的으로는 받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받지 않을 수 없는 特殊한 問題가 있을 境遇 받어도 無妨하다라고 法條文을 解釋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實際 行政적으로 다루어질때는 이 入館料를 안받는데것을 原則으로 하고 不得已한 事情이 있는 境遇 例外的으로 받을 수 있다고 生覺되며 앞으로 이方向으로 다루워져야 될것으로 봅니다.

金康鉉 : 이 入館料問題에 對해서는 아마 圖書館人들 便에서는 法務官인 저 自身에게 遺憾의 뜻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率直히 말해서 저는 처음부터 받지 않는다는것을 原則으로 하고 받을 수 있다는 規定을 세우자고 主張한 사람입니다. 이點 한번도 굽힐바 없고 繼續主張한바 입니다. 왜냐하는것이 가장 重要한것으로 제가 반드시 解明하지 않으면 안될 立場입니다. 우리가 圖書館法을 만든다고 끝이 나는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한個라도 많은 圖書館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圖

書館法의 主要趣旨가 아니겠읍니까. 만 들고 育成하는것이 問題가 되는것입니다. 自治團體에서 圖書館에 理解 깊은 사람이 努力만 한다면 設立은 容易하고 全國的으로 多數의 圖書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維持하는것이 더 重要합니다. 特히 우리나라 自治團體의 財政實情을 볼때 地方自治團體收入이 極히 微弱하여 國庫補助를 받고 있는데 그럼 國庫補助에서 圖書館運營에 對한 補助를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圖書館은 못세웁니다. 圖書館維持를 爲해 補助費가 없다면 解決을 如何히 하느냐 여기에서 빠져 나올 구멍이 必要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不利합니다. 設立한後 惹起될 問題가 더 큼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爲하여 法을 만들때 融通性이 없으면 困難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自治團體가 自營이되고 또 國庫에서 더 補助한다면 받을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반어서 國庫收入을 만들어본들 얼마 되겠읍니까. 現在 事情은 相當히 困難하니까 法으로서는 적어도 現實的인 可望있는 法條項을 만들어야져 現實事情을 度外視한 法條文을 만들어서는 그 法이 融通性이 없는 法이 되고 말것 아닌가라고 主張한 것입니다. 그것은 後에 運營해 보면 어느쪽이 더 實質的으로 잘 된것인지 比較되겠읍니다만 좋은데로 次後 改正될 수 있는 것이니 그點 내가 어떤 偏見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法理論으로 보아서 公共團體가 營造物을 運營할때는 그 營造物을 利用하는 手數料 또는 分擔金이 있습니다. 例하면 公立의 中·高等學校에 學生을 보낼 때 授業料를 받지 않는것이

理想的이지만 授業料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點을 봐서 入館料에 關한것을 全的으로 無料로 한다는것은 困難하다는 것입니다. 圖書를 갖지 않은者에게 閱覽시킨다는 點이 있겠으나 法理論上 無料가 어렵고 現實的인 問題에 있어서도 빠져나갈 길을 터 놓는것이 理想的인 이 아닌가하고 끝내 主張해온 것입니다. 이런것은 나중에 批判의 對象이 되어 나쁘면 改正이 될 것으로 압니다.

李鍾文: 저이는 第8條의 入館料와 그外 2, 3種의 條項에 對해 不滿스럽게 生覺하고 있습니다. 入館料問題는 金法務官이 한번도 굽힘없이 主張하셨는데 이點저와 여러번 意見의 對立이 있었읍니다. 저이가 理想的으로 生覺할때 公共圖書館은 入館料를 받을 수 없는것이 原則이라 봅니다. 隣國인 日本에는 받을 수 없다고 明文文化되고 있는것은 좋은 例입니다. 저이나라에 있어서는 事情이 다른만큼 안받는것을 原則한다는 點 雙手로 贊成입니다. 但 이런 條項이 나오면 對해서 遺憾으로 生覺합니다. 이 條項을 보면 公共圖書館은 使用者에 對해서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草案할때는 못받는것을 原則으로 하되 받을 수 있는 即 빠져질수 있는 구멍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腐心하여 이런 條項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 條項을 圖書館法에서 言及치않고 削除해 버리면 어떠냐하는 點 強調했읍니다. 그러면 받는다. 안받는다에 言及을 안하면 받을 경우는 받고 안받는데는 그대로 좋은데 이 條項을 넣어서 法文에라도 後進國임을 못박을 必要가 없지 않느냐 하는 生覺에서 었읍니다. 그런데 法을 다루는

分들이 法體裁上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強調했습니다. 그런데 最高會議에 올라 가서는 받을 수 없다. 但 받을 수 있는 境遇 文敎部長官의 事前 別途의 承認을 받는다고 條文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이 圖書館人의 主張과 文敎部側主張의 折衷이었지요. 그래서 저이는 圖書館法에 있어 體面을 세웠다고 生覺했는데 다음날 再審議에서 다시 削除되고 原來의 案대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좋은 意見이 있었읍니다만 圖書館界에서는 앞으로 이에 對해 많은 批到과 論議의 對象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圖書館法에서 저이가 第一 궁금하게 生覺하고 있는 第7條에 關해서 料理事에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朴熙永 : 第7條가 公共圖書館이 되어 있습니다. “豫算의 範圍內에서 公共圖書館의 設置, 育成에 努力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原來 저이가 目的한 것은 義務條項으로써 地方自治團體가 圖書館을 만들것을 願했드랬읍니다. 그런것이 이번 圖書館法에는 育成에 努力해야 된다고 制定되었읍니다. 여기가 失望된 點이며 強制規定이 되었으면 했던 期待에 벗어난것이 되었읍니다.

金康鉉 : 第7條問題에 對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角度에서 評價를 해 봐야 겠읍니다. 하나는 圖書館人의 立場과 또 하나는 圖書館과 相關이 없는 第三者—勿論 全然 相關이 없다고는 못하나—直接 密接한 對象이 아닌者의 立場입니다. 첫째 圖書館人의 立場에서 볼때 모든 社會의 人士들이 讀書을 즐기고 境

遇에 따라서는 相互 어떤 娛樂도 갖는 立場에서 鄉土愛와 같은 그러한 性格에서 모든 公共團體는 圖書館을 設置해야 한다는 強制性을 賦與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第三者의 立場, 法理論的인 面에서 볼때는 이것은 事實上 憲法精神을 違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地方自治團體란 것은 國家의 事務外에 固有의 事務를 中心하여 成立되고 있는데 이 圖書館이라든지 其他 社會福祉行政이란것이 根本的으로 固有의 公共事務입니다. 固有의 公共事務는 地方自治團體가 할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圖書館外에 體育館을 더 많이 設置하느냐 圖書館을 더 設置하느냐 함은 그 自治團體의 議會가 決定할 問題이지 法律이 너는 圖書館을 꼭 設置하라 其他의 것은 안해도 좋다는 式으로 規定치는 못합니다. 體育法에서 體育館을 꼭 設置하라 또다른 音樂分野에서 音樂館을 設立하라 等等이 모다 된다고 假定한다면 自治團體의 任意의 事務 卽 固有事務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國家의 命令에 依해서 國民學校를 設立한다는 境遇와 같이 되어버리는만큼 現在 圖書館法에 規定된 條項內容이 法理論上 妥當하다는 見解입니다. 然而나 우리나라의 實情과 財政事情으로 봐서 任意規定으로 해둔다면 設立하지 않을 터인즉 圖書館人은 國家가 設立해 주라는 規定을 해주라는 義務規定을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中央政府의 國庫에서 60%以上의 設立豫算을 補助하여야 된다는 別途條項이 挿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國家가 自治團體에 法律로서 어떤 意思를

強制할 때는 그에 對한 對價를 自治團體에 支拂해야 되는 것이며 國家의 實情으로 봐서 이것이 實現되지 못하니 지금은 이에 對한 慾心을 내지 말고 이 程度로서 正常的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教育自治法도 같이 되었으니 自治團體의 教育長이 義務的이 아니라도 그가 努力만 한다면 設立될 수 있는 만큼 法에서 할수 없는것은 行政力으로서 可能하게 推進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李鍾文: 公共圖書館問題에 있어서는 前述한 入館料와 같이 不足感이 있는바 여기에 對해 申課長任의 말씀을 付託드립니다.

李淳甲: 方今 金法務官任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法理論上로봐서 圖書館이라하면 地方自治團體의 營造物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營造物로 볼 때는 固有事務가 되겠는데 圖書館이 가지는 機能面으로 보아 이것은 國家의 社會教育機能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亦是 國家事務와 關係가 있다고 보는 見地에서 外國의 例를 보면 公共圖書館法에 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는 義務規定을 두고 있습니다. 公共圖書館의 設置問題에 關係서는 大體로 세가지로 區分된다고 보는데 첫째 地方自治團體는 期必 公共圖書館을 設置하도록 強制規定을 하는것과 또 하나는 金法務官의 말씀과 같이 自己들의 任意規定으로서 自治團體가 固有事務로서 設置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것과 또 남겨지는 우리가 取한 規定과 같이 中間을 擇하는 強制規定도 放任하는 規定도 아닌 即 國家나 公共自治團體는 圖書館을 設置, 運營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即 上

述한 中間規定을 뜻하는 것입니다. 要는 設置規定보다도 公共圖書館을 政策的인 面에서 볼때 많이 設置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特히 韓國에는 公共圖書館이 27個館밖에 없습니다. 外國과 比較가 되지 않을 程度의 差異가 있습니다. 公共圖書館이 社會政策面에 影響을 주는 點이 相當히 많은만큼 政策的인 面에서 公共圖書館을 많이 세워야겠다는 見地에서 考察할때 強行規定을 둬야 바람직한 것이나 昨年에 閣議에 上程된 案은 이것을 強制規定으로 했기 때문에 失敗를 하였으니 이點 參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文教部가 中心인만큼 重點的으로 生覺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음으로 圖書館人的 集合體인 圖書館協會에서도 이런點 앞으로 地方自治團體는 公共圖書館을 設置해야 한다는 規定을 만들수 있는 雰囲気와 契機를 繼續적으로 만들도록 힘써야될 課題인 것으로 봅니다.

李鍾文: 公共圖書館에 있어서는 圖書館法을 推進하면서 큰 前提가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公共圖書館을 비롯해서 學校圖書館을 義務的으로 設置하도록 함에 한 問題가 있고 또 하나는 圖書館에서 從事하고 있는 司書職의 專門性を 確立해서 社會的인 法的인, 保障을 받도록 하는 두가지 點의 重要性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點 法制定에 있어서 行政的으로 內務部와는 密接한 關係를 가지므로 強力한 要求를 했고 內務部에서는 公共圖書館의 義務的規定에 對해서는 相當한 反對가 있어 隘路가 많았는데 이點 國立圖書館長任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崔洛久:네, 이 法을 當時 草案했을 때는 義務規定으로 했드랬을지다만 이번 任意規定으로 바꾸어진것을 金法務官께서는 法理論을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事實上의 事情이 그렇게 된것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나하면 昨年에도 次官會議에서 否決된 重要な 骨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義務規定으로 한다면 前述한바와 같이 自治團體 單位로 公共圖書館을 強制的으로 設置하게 되니 負擔이 큼으로 積極反對되었고 우리의 實情으로 보아 公共圖書館을 많이 設置한다는것은 困難한 일입니다. 따라서 現實的 與件으로 바서는 이번 法規定과 같은것을 만들지 않으면 法이 안되는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今年에도 이것을 義務規定으로 했다면 當初부터 內務部와는 妥協이 不可能했을 것이며 아울러 次官會議에도 通過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當時는 現在보다 與件이 相異하였으며 現在는 教育法이 改定되어 教育自治制가 確立(教育自治法이 圖書館法과 同日字로 通過)되었기 때문에 公共圖書館을 設置할 責任者가 自治團體의 教育長이 되겠습니다만 그當時는 市長, 郡守가 責任者였기 때문에 內務部에서 應해 줄수없는 形便이었고 그래서 이와같은 與件下에는 이번같은 法制定이 不可避한 것이었습니다.

李鍾文:이 公共圖書館의 設置問題는 義務規定이 아니고 勸獎規定이 되어 있습니다만 未久에 圖書館法이 改正될때 義務規定으로 꼭 改定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問題인 司書職員에 관한것으로 말씀을 옮기겠습니다. 第6條

에 司書職員의 配置가 있습니다. 여기서 第4項에는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에는 閣令이 定하는바에 依하여 圖書館 資料 및 運營에 관한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를 두어야한다.”또 第2項에는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의 資格과 養成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이 定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第6條의 精神을 보면 學校圖書館 即 專門學校以上 大學에는 專門職司書, 初·中·高等學校에는 司書教師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第26條(職員)에 보면 學校圖書館의 職務를 擔當할 職員으로서 實業高等專門學校, 初級大學, 大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校에는 司書職員을 두어야 하며 國民學校 中·高等學校에는 各省 司書 教師 또는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두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司書 및 司書教師 그리고 司書職務를 擔當할 教師의 概念에 對해서 法務官任 말씀을 付託드립니다.

金康鉉:두가지로 區分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公共圖書館 또는 國立圖書館의 境遇 專門인 司書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國家公務員法에 있어 司書職의 概念이 나와 있으니 크게 論議할바는 없겠지만 그 內容을 試驗치루는 것이 아니고 實際的으로 養成하는 式으로 資格을 주느냐 하는것은 앞으로 閣令으로서 規定되었을지다만 法令의 限界를 떠나서도 많은 論議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學校에 두는 境遇인데 司書教師, 司書를 擔當하는 教師입니다. 司書教師의 資格이 없는 사람이 司書職務를 擔當할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至今 우리나라 事情으로 봐서 司書教師를 別

途 配定하기가 難處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國民學校의 境遇 學級이 5個라 한다면 學級擔當教師外에 司書職敎員이 있어야겠는데 그 T.O.가 없는 것입니다. 義護敎師는 T.O.가 確保되어 있습니다만 T.O.가 없기 때문에 學級 擔當敎師가 司書職을 함께 擔當해야 되겠다는 結論이 나옵니다. 多幸히 學級敎師와 司書敎師의 資格을 함께 가진 사람이 같이 業務를 맡게 되면 問題도 解決되는데 5個의 學級擔當敎師中 司書의 資格이 모두 없고 司書敎師 T.O.가 없다면 結論의으로 配置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 當初 學級擔當敎師中 어느 敎師를 指定하여 司書職을 兼務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런 境遇 學校에 司書敎師를 두어야 한다는 法의 精神에 違反이 되니 法의 趣旨를 살리기 爲해서는 敎師를 司書敎師로 配置할때 그 敎師가 司書職에 對한 特殊한 訓練을 過去 가졌거나 圖書管理에 經驗이 있는者를 選定하여 再配定해야 되는 것입니다. 中·高等學校의 境遇 T.O.上에 어느程度의 餘有가 있으니 이點 解決될수 있는 問題라 봅니다. 國民學校에는 現實의으로 어려운 隘路가 있으니 이런點 法理論을 떠나 政策의으로 司書의 養成等을 實施하여 圓滑을 期할수 있도록 漸次 計劃되어야 할것이 아닌가 生覺하고 있습니다.

李鍾文: 이 問題에 對해 社會敎育課長任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申淳甲: 이것은 原則論으로 따지면 圖書館이 專門性을 高度로 要하는 職이니만큼 이러한 專門性이 강한 職務를 擔當하는데는 專門의인 敎育을 받은 司書가

絶對 必要하다고 큰 關心을 갖고있으며 圖書館에 專門人을 配置해야 될 것이 要請됩니다. 이런 概念을 金法務官任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國家機關일때 司書職은 國家公務員法에 規定되어 資格을 가지며 一定한 訓練, 證衡, 試驗에 合格한 사람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私立學校의 境遇 이에 準하여 資格을 가진다고 보겠는데 具體的인 것은 閣下으로 定하게 될 것입니다. 司書擔當敎師는 司書敎師로서의 資格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 司書敎師에 關한 것은 現在 敎育公務員法에 司書敎師制度를 세로 規定하고 있습니다만 亦是 거기에 보면 大學의 圖書館學科를 나온 分이나 또는 一般敎師로서 一定한 課程의 講習을 받은 사람이 司書敎師의 資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저이들은 原則을 두자는 것입니다. 各學校는 司書敎師로서 別途 配定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國家의 財政과 關聯을 갖게 되므로 現實이 容易치 못하니 財政의으로 어렵고 또 司書敎師의 訓練을 받은 分이 極히 少數인 만큼 需要에 充當하지 못하는 財政的인 面과 現在 人員不足等을 考慮해서 여기 救濟의 路로서 司書를 擔當하는 敎師를 現職敎員이 兼職토록 한다는 規定을 두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 分이라도 一定한 訓練을 받은 사람이 擔當하면 될것입니다.

李鍾文: 司書敎師, 司書職員問題는 저이가 生覺하는 法의 性格을 決定하는 두 세가지 重要한 問題의 하나로 生覺하고 있습니다. 제가 記憶하기는 最高會議文 社委員會에서 이 問題가 審議되었을때 多少 時間이 걸려 이 關係條項에 對한

討議가 繼續되었고 거기서 司書職務를 擔當할 教師라는 明文이 添加되었습니
다. 저이가 生覺하기에는 司書教師는
어네까지나 教師다. 教師가 學校圖書館
의 일을 본다. 그런데 教師가 가르키는
일을 아니하고 卽 敎壇에 서지않고 圖
書館의 職務에만 專念하는 司書教師를
生覺할수 있고, 또 가르키면서 圖書館
의 職務를 兼務하는 것을 生覺할 수 있
습니다. 現在 韓國의 實情에서는 우리
가 處해 있는 形便으로서는 專擔司書教
師를 두는것이 希望이지만 兼任으로서
도 運營이 可能할 것으로 生覺하고 있
습니다. 法에 司書教師 또는 司書を 擔
當하는 教師라는 條項에 對해서는 現在
圖書館法이 司書教師를 꼭 두어야 한다
고 規定해도 이 法이 公布되어 나오면
國家가 이 法을 違反하게 될 것입니다.
그 理由는 學校가 모다 資格있는 司書
教師를 두려고 해도 둘 수 없는 形便입
니다. 이點 重要한 問題가 될 것입니
다. 그래서 最高會議에서 論議될때 韓
國에는 教師資格者로 圖書館教育을 받
은 卽 司書職을 擔當할 수 있는 教師가
200名이 未達이므로 法이 公布되면 全
國에 사람들을 全部 配置키 困難하니까
于先 司書教師가 있는 學校에는 이들에
게 充當시키고 없는때는 教師中에서 司
書職務를 맡도록 任命하고 任命한 直時
文教部長官이 委囑하는 機關에서 所定
의 訓練을 받도록 해야될 것으로 압니
다. 이러한 講習課程에서 司書教師가
具備되어야할 資格要件을 가져서 司書
를 擔當할 수 있게 教師를 養成하도록
저이들이 細密한 檢討와 研究를 함으로
써 將次 圖書館法이 改正될 段階에 가

서는 全國의 學校에도 좋은 資格을 具
備한 司書教師를 제대로 配置할 수 있
으리라 보고 이 條項에 關한 일은 大端
스리 問題가 안 될것으로 生覺하고 있
습니다.

崔洛久: 이點 圖書館法에도 第一 重要한
部分으로 生覺되며 最高會議常任委員會
서도 司書教師 또는 司書職員을 두어야
한다는點 相當한 論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司書 또는 司書職員을 둘
라면 相當한 人員이 要求될것이 아니냐
換言하면 T. O. 가 增員되어야 하지 않
느냐는것에 論亂이 많았습니다. 前述한
바와같이 正規圖書館學科, 또는 講習課
程을 履修하여 資格을 具備한 사람이
僅少하고, 또 많다해도 豫算上一括 配
置한다는 것은 國家的으로 至難한 處地
인 것입니다.

李鍾文: 이제까지 全文 29條에 걸쳐 問題
가 되는點 추려 討議한것으로 압니다.
法을 만들면서 저이가 오히려 現在 韓
國의인 與件, 좀 具體的으로 말씀드리
면 해야될 좋은 事業은 너무나 많고 그
것을 着手해서 推進하기는 너무나 國家
나 國民의 財政形便이 窮乏하여 이런
程度의 法이나마 만들었다는點 自慰치
않을수없고 또 오히려 자랑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點 몇가지가 있지 않는가
生覺됩니다. 例를 들면 公共圖書館에
어린이部를 設置한다든지 昨年까지 中
· 高等學校以上에만 學校圖書館室을 設置
토록 規定한것을 이번에는 國民學校까
지 包含시킨點 一저이를 立場에서는
幼稚園까지 넣는것을 主張했습시다만
理解를 얻지 못했습시다만 一도 私·
公立 公共圖書館에 政府 또는 地方自治

團體는 財政 其他의 援助를 할 수 있다는點 더 나아가서는 公共圖書館을 세우는데 있어 道·市는 環境造成을 爲하여 格外히 努力을 해야 된다는 規程을 凝은點 等等 보람있는 일이 된것으로 確信하고 있습니다. 이런 面에서 社會教育課長任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申淳甲 : 저는 우리나라의 圖書館法의 性格에 있어 圖書館事業에 關한 綜合的인 基本法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의 例를 보면 國立圖書館法이 있고 圖書館의 基本法으로서의 圖書館法이 있으며 또는 學校圖書館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圖書館法속에 基幹設置法의 要素 그리고 學校 또는 學校圖書館, 公共圖書館, 特殊圖書館等에 關한 것이 綜合的으로 規定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圖書館에 關한것은 圖書館法 하나로써 우리가 總括的으로 把握할 수 있다는것, 體系를 세워서 全部 理解할 수 있다는것에 利點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方今 李局長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첫째는 施設面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圖書館이 設置되어서 運營하는에는 施設面과 人事面이 있습니다. 施設面에는 閣令으로서 定하게 되어 있습니다. 基本的인 事項에는 이 圖書館法에도 規定이 되어 있는데 特別 圖書館의 位置 環境이라든지 利用에 便利해야 된다. 或은 保健, 衛生, 管理에 適合해야 된다. 그리고 專門機關으로서의 圖書館의 여러가지 施設, 여기서는 圖書館資料, 建物構造, 閱覽施設이라든지 其他 備品等을 들어 놓았읍니다만 이런것이 앞으로는 具備되도록 閣令으로 詳細히 規定되어 나을것이라고 믿습

니다. 이런것이 法으로서 基礎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圖書館이 施設面에 있어 內容的인 充實을 期할 수 있는 基準이 되지않나 生覺되는 것 입니다. 다음에는 學校圖書館에 關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學校圖書館에는 高校以下와 專門學校 또는 大學以上을 나누어 區別하고 있습니다. 高等學校以下 國民學校까지는 圖書館과 圖書館을 設置하고 專門學校, 大學以上은 期必 圖書館을 設置하도록 規定하고 있습니다. 昨年까지의 草案을 보면 大概 中等學校以上에 圖書室, 圖書館을 두도록 했읍니다만 今般에는 國民學校까지 擴張해서 設置하도록 한것은 一步 前進된 法規定이 된것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現在 國民學校에 圖書室을 設置한곳이 極少입니다. 具體的 施設基準이라든지 또는 年次的인 設置計劃에 關한 經過規定은 將次 閣令으로 別途 決定되겠습니다. 如何든 國民學校 以上에 圖書室, 圖書館을 設置한다는 것은 學校教育에 있어 圖書館은 教育의 心臟部가 된다는 것을 불배 兒童들의 學習活動이나 地域 社會에 至大한 貢獻이 있을 것을 期待하고 있는 바입니다.

金康鉉 : 圖書館法에 對해 總括的으로 말씀드리면 圖書館法이라는 立場보다도 이 法이 만들어짐으로써 하나의 잊어버렸던 分野, 即 關心이 別로 없었던 分野에 對해서 關心을 갖게 된 結果가 되지 않았느냐, 可令 地方自治團體에 施設을 한다 事業을 한다해도 豫算이 없을 뿐 아니라 着想이란것이 極히 어려운 것 입니다. 이런것이 擡頭되었을때 着想이 容易하고 또 圖書館에 關해 어떤 關心

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對해 意思를 集中시키기가 容易한것입니다. 卽 어떤 營造物을 設置經營할만한 主體者의 立場에 있는 사람에게 着想을 끌기 쉬울 뿐 아니라 國民에 對해서도 關心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圖書館法의 制定이란 當然히 關心을 갖어야 할 잊어버린 分野를 끌어올리는 結果가 될것으로 봅니다. 原則上으로는 이것은 大陸法系의 精神에 따르자면 立法까지 해야 할 事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獨, 佛 같은데서 立法이라 하면 國民의 權利義務에 關한 事項은 반드시 法律로 定해야되고 그 나머지는 法律이 아니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問題는 原則적으로는 自治團體의 條例, 規則 등으로 實踐이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境遇 그렇게하면 統一도 안되고 또 남들이 볼때에 明確히 못하다는 點에서 最近에 大陸法系를' 따른 日本의 境遇도 이런 關係의 法令을 數多히 만들고 있습니다. 卽 嚴密한 意味에서 立法事項이 아닌것을 立法事項으로 해가지고 社會教育 乃至는 經濟行政等 모든 分野에 適用하고 있습니다. 이런 意味에서 圖書館法의 制定이 圖書館活動 乃至는 社會教育에 크다란 하나의 動議를 賦與하는 結果가 되지 않는가 보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앞으로 그러한 精神과 動機에 附合되도록 行政의으로 밀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點 두가지로 生覺되는데 첫째는 施設을 相當히 擴充시켜야 할 方針을 세워야겠고 둘째는 그러한 施設을 利用하는데 積極性을 期하여 讀書할 수 있는 動機를 만들 수 있는 方針을 計劃에야 된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積極的인 讀書 勸奨는 豫算과는 크게 關聯을 맺는것이 아닌것으로 봅니다. 代身 時間과 努力이 大端히 必要하겠읍니다. 이런點 關係이 施設 其他 內容設備等に 充實을 期할 수 있는 方策을 講究해야 되는 것이며 둘째 利用者들이 積極的으로 閱覽을 할수있는 方便을 組織的으로 講究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저의 所感은 大體로 이런데 있습니다.

崔洛久 : 이 法制定이 아까 具體的으로 말씀 드렸읍니다만 8年間이란 오랜 世月 끝에 制定되었다는 點 遺憾스럽긴 합니다만 그 代身 內容面에 있어 相當히 現代化된 것으로 보아 多幸스럽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圖書館을 設立한다는 것도 重要問題지만 如何히 하면 一般의 利用에 効果的으로 奉仕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것은 저들 圖書館에 從事하는 館人으로서 誠意를 다하여야 될것으로 生覺됩니다. 한便 이 施設面에 있어서 現在 公共圖書館이 27個가 있다고 하지만 國立圖書館을 除外하고는 한 圖書館에서 書籍이 萬卷以上 있는곳이 別로 없읍니다. 遺憾스럽읍니다. 이제 教育自治制가 確立되었으니 設立者와 運營의 責任者는 自治團體의 教育長이 될것이니 圖書館을 設置하고 이 圖書館의 最少限度의 面貌를 가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至大한 關心을 傾注해야 될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國庫補助金에 對해서도 現在의 財政規模로 보아 期待키 어렵잖은가 봅니다. 이번 法制定에 있어서도 事實은 經濟企劃院에서 우리 法과 거의 같은 內容의 補助할 수 있다는 規定이 包含된 法案이 數個 있었읍

니다. 圖書館法이 어떤 權力을 內包한 法이고 利權이 介在되었다 할것 같으면 經濟企劃院의 協助는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圖書館法이 落後된 文化를 우리가 이 法을 通해서 早速한 時日內에 向上 시켜야겠다는 意態에서 積極協助가 있는 것입니다. 圖書館法關係로 豫算局(經濟企劃院)에서는 關係課長會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他法과 같은 待遇를 받기 爲해서 鬭爭까지 해야 될 것이었으나 모두가 이 運命이 崎嶇하고도 분쌍한 圖書館法의 必要性을 切實히 認定해 주어 힘을 모아 주실點 至極히 感謝했습니다. 勿論 여기서 公共圖書館에 있어서는 司書職員을 配置하게 되어 있고 司書職員을 配置하는데 있어서는 豫算範圍內에서 補助할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이것은 地方自治團體의 設立者가 自體豫算에서 設置運營해야 될 것으로 보아 너무 過分한 것은 期待키 어렵습니다. 結論的으로 말하면 圖書館設立者乃至 圖書館에 從事하는 사람이 앞으로 奉仕에 對한 熱誠이 圖書館發展에 原動力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朴熙永 :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點 法에 對한 總評이랄까 이런면에서 朴理事任 말씀을 付託드립니다.

朴熙永 : 圖書館法에서 우리 圖書館人들이 바라는 重要한 條項이 第6, 7, 8條에 收錄되어 있습니다. 이 3條에 完全히 滿足키 어려우나 制定은 되었습니다. 아울러 圖書館法에서 우리나라 圖書館의 位置가 그래도 뚜렷해 졌습니다. 于先 圖書館이란것을 國家가 볼때 國民의 教育과 文化의 向上에 寄與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하나는 社會教育에 寄與할을 目的으로하는 施設이 圖書館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原來 希望하던것 보다는 좀 거리가 있으나 現實的으로 圖書館의 概念이 明白해진 것입니다. 第5條에 圖書館이란 必要한 建物과 圖書館資料와 閱覽施設과 그外에 여러 施設이 있어야 圖書館으로서 形成될수 있다고 했고 圖書館의 環境과 施設이 利用에 便利하고 管理, 保健, 衛生에 適合하여야 한다는點 우리들과 生覺이 附合되는 適切한 規定입니다. 이렇게 圖書館法이 制定된 오늘날 우리 圖書館人들이 다만 바라는 것은 強力한 國家政策의 實踐이고 그것에 따른 뒷받침으로 우리들 館人의 努力이 必要한 것입니다. 우리가 圖書館法을 十分 利用하여 將次 훌륭한 圖書館 國家를 이룩하도록 努力해야겠습니다.

李鍾文 : 좋은 말씀입니다. 罪悚합니다만 저이가 이 法案에 있어 多少 不滿스런點이 있음은 어쩔수 없습니다. 不滿스런點이란 것을 너무 理想的이라고 責하셔도 할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이들이 生覺할 수 있는 限度에서 規定지을수 있는 몇가지 條項에 對해서는 滿足을 하지 않지만 國家에서 現在 어려운 處地에서 圖書館法을 制定해 주었다는點 現時點에서 볼때 大端히 重要한 것이라 봅니다. 國家가 圖書館法을 制定한다는 것은 圖書館事業을 國家가 國事家業의 一環으로서 앞으로 着手해서 推進하겠다는 意思의 表示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圖書館法을 圖書館人이 모여 推進한지 8年, 그리고時機를 捕捉하여 今年 다시 着手한 것이 지

난 6月以後 4個月間 主務課와 法務官으로부터 局長會議·次官·長官을 거쳐 法制處로 가고 法制處에서 修正된것을 次官會議로 올라가고 여기서 批查나 審議가 保留되어 時間을 끌었으나 文教部 尹泰林次官任의 積極인 推進으로 通過되고 閣議도 또 여기서 通過하여 最高會議運營委, 文社委, 法司委, 또다시 運營委 그리고 常任委員會까지 12個 段階를 거쳐 이 圖書館法이 制定되었습니다. 感慨 無量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法을 가지고 저이들 圖書館人들은 國家와 民族에게 專門職으로서 맡과 努

力을 쏟아서 韓國의 圖書館人으로서의 恥은바 職分을 다할것입니다. 이 法이 지닌 國家的 文化的 意義는 크며 이 法의 運營을 通하여 圖書館發展外에도 敎育界 學術活動을 하는 著者 出版界 및 外國書籍이나 國內書籍을 다루는 書籍界等에도 하나의 活路를 마련하였다는 點에도 意義가 클것임을 確信하는 바입니다.

圖書館法의 改正을 볼때는 보다더 理想的인 法이 制定될것을 다짐하면서 바쁘신中 나오시어 좋은 말씀 感謝를 드립니다.

任 鍾 淳 著

分類表比較研究, 서울

연세대학교 도서관 학과, 1963.

213p. 26cm (연세 대학교 도서관학 총서 제13집)

값 : 300 원

판매처 :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